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

당사가 수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58-2 일원에 소재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공매를 실시합니다.

1. 공매대상 물건

[1] 토지

No	지번	지목	면적(m ²)
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58-2	대	40
2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55	대	140
3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56	도	5
4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54-25	대	142
5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37-2	답	10
6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45	대	210
7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57-2	대	6
8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58	대	216
9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39-4	도	13
10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27-7	대	27
합 계			809

[2] 건물

No	소재지		면적(m ²)
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45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109.2
		2층	85.17
		부속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변소	2
2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58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잇지붕 2층주택	1층	99.34
		2층	63.11
		부속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잇기지붕 단층변소	2
3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단층주택	73.42

	754-25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부속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변소	1.98
4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55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80.33
		2층	73.38
		부속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변소	1.98
합 계			591.91

※ 공매대상 물건 세부 현황, 공매관련 기타자료 및 공매변경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www.koramco.co.kr) 및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www.onbid.co.kr)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2. 공매일시 및 공매예정가격

회차	공매일자	공매시간	공매 목적물	공매예정가격(원, VAT포함)
1차	2022.05.24. (화)	10:00 ~ 11:00	본 공매공고 1. '공매대상 물건' 참조	6,148,560,000
2차	2022.05.27. (금)	10:00 ~ 11:00		5,636,180,000
3차	2022.06.02. (목)	10:00 ~ 11:00		5,123,800,000

3. 공매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www.onbid.co.kr)(1588-5321)

4. 공매방법 : 일반경쟁입찰(단독응찰도 유효)

- 1) 본 공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온비드' 이용방법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 2) 공매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하며, 공매 회차별 일괄입찰만 가능합니다.
- 3) 동일조건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공매 유찰시 다음 회차의 공매 예정시간 1시간 전까지 직전 회차의 공매에

정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 수의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계약보증금 수납접수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 03회차 공매까지 유찰될시 03회차의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 수의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계약보증금 수납접수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 5) 상기 공고된 공매는 당사의 사정에 따라 전체 차수를 진행하지 않고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개찰일시

차수	개찰일시	
1차	2022.05.25. (수)	13:00
2차	2022.05.30. (월)	13:00
3차	2022.06.03. (금)	13:00

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10%이상을 인터넷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공매개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예금계좌로 입찰일 익일에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6.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 1) 낙찰자는 낙찰 후 5[영업]일 이내에 당사 소정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 후 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 2) 관계법령에 의거 매각대상물건의 매매계약허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낙찰 후 관계법령에 의거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 10%(입찰보증금 대체 가능),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잔금 90%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대상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위 계약금 및 잔금 납부시점에 그 비율(계약체결시 : 10%, 잔금 지급시 : 90%)에 맞추어 매매대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비용과 토지거래계약허가, 부동산거래신고, 용도변경 등 인허가의 책임 및 추가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신고 등 행정절차의 누락에 따른 과태료(매도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포함) 또한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5) 매매계약 체결 필요서류

- ① 인감증명서(법인 : 사용인감계 포함) 1부 및 인감도장
- ② 주민등록등본, 초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③ 신분증(개인), 대표자 신분증(법인)
- ④ 대리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위임인의 인감날인 포함), 대리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 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신분증(개인)] 각1부
-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이행 각서(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1부

7. 소유권 이전

- 1) 입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공매물건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적·법률적 하자 및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사항은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 2) 공매물건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위탁자(또는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탁자에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무유예결정(워크아웃개시)이 있거나 공매물건에 관한 일체의 매매완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매완결에 장애가 될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함)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기지급한 매매대금(이자금을 제외한다)의 반환 이외에 매수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또는 비용의 지급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3) 본 공매공고일 기준, 공매 대상 목적물에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6카합 34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기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라 함)이 존재함에 대하여 매수자는 부지를 주장하지 못하며, 만약 잔금 납부일까지 기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거나 그 이외 본 공매 목적물에 관하여 추가적인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발생 등의 소유권이전의 제한사항이 존재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기지급한 매매대금(이자금을 제외한다)의 반환 이외에 매수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또는 비용의 지급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4)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공매물건 낙찰 후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인(낙찰자)은 현재 공매물건에 체납된 관리비에 대하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등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매수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6)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공매물건과 관련한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 7) 공매물건에 「주택임대차보호법」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매수자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 8) 공매목적물에 대한 명도는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부연하면, 공매목적물의 명도 관련 일체의 법적 분쟁 및 민원 등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수탁자는 위 명도와 관련하여 매수자에게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9)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법률관계의 정리, 명도, 철거, 수거, 인도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10) 매수자는 잔금을 전액 납부하고, 본 공매공고 및 기타 매매계약에서 정하여진 매수인의 의무(잔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지급 등)를 이행 완료한 후,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1) 매도자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① 매각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 하자
 - ②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등을 포함한 매각부동산에 존재하는 일체의 권리상의 하자 및 제한
 - ③ 행정상(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권리제한
 - ④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 ⑤ 등기부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
 - ⑥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 ⑦ 민법 제569조 내지 581조에 정한 매도자의 담보책임
 - ⑧ 본 공매공고 상 임대차현황과 실제 임대차현황의 상이
 - ⑨ 공매물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급에 대한 책임 여부
- 2) 공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공매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제세공과금(단, 공매목적물에 관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에서 납부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수탁자에 의해 신탁재산에

서 납부된 제세공과금은 제외함), 준조세, 각종 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원, 관리비, 인도 및 명도(임대차 및 거주자 등 제권리관계),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및 지상권, 유치권 등) 및 공매목적물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정리는 매도자에게 부과된 것이라도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며, 이에 대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공매목적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매수자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승계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목적물의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하므로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명도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본 물건에 대한 임차인 또는 점유자의 확인은 전입세대 열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매수자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 공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공매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관리비(공용부분, 전용부분 포함함)는 매도자에게 부과된 것이라도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합니다. 따라서 공매목적물에 관한 관리비 현황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 전에 매수자가 직접 파악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5)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 공매입찰참가자규칙”(공매공고 및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내용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 6) 공매목적물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처리사항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합니다.
- 7) 공매목적물의 안전, 유지관리, 관련법령, 이용상 필요한 시설은 매수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8) 당사는 공매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9) 당사가 공지하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및 점유 현황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매도자는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그 불일치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매수자는 입찰전 매수자의 책임으로 공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및 점유 현황에 대해 직접 파악해야 합니다.
- 10) 매수자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의 부실관련자(이하 부실관련자)에 해당되어 공매부동산의 우선수익자가 잔금완납 전에 매매계약(낙찰 또는 수의계약 등) 취소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매매계약(낙찰)은 취소 또는 해제되며 기 납부한 계약금(입찰보증금)은 당사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 11) 매수자는 부실관련자 해당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매도자에게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할 수 없고 부실관련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매수자는 이를 이유로 일체의 이의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매(수익)계약의 잔금납부일까지 부실관련자 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잔금납부일은 부실관련자 해당여부가 확인되어 매수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변경되며 매수자는 이를 이유로 매도자에게 매매(수익)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12) 본 건 공매는 위 위탁자 및 채무자와 당사간 신탁계약에 의거 우선수익자의 환가처분 요청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써,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의 부실관련자(부실금융기관 등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는 본 건 공매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 또는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입찰보증금(계약시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소유권 이전 이후 발생한 자산운용수익 및 제3자 양도 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당사에 지급하는 조건이니 입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참가 제한 대상자

- ① 환가처분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 ②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 ③ 허위명의로 매수를 신청한 자
- ④ 공매집행자의 직무행위를 방해한 자
- ⑤ 채무자 등 민사집행규칙 59조에 의한 매수금지자,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관련자 등
- ⑥ 회사 직원, 기타 입찰 참가가 부적당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자
- ⑦ 예금보험공사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예금보험공사 소속 파산관재인(대리인) 및 그 배우자, 해당 재단소속 보조인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실관련자는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부실금융회사 등이란 해당 부동산의 우선수익자인 파산자 솔로몬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모든 부실금융회사를 말한다. ③ 부실관련자 해당 여부는 입찰전에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파산자 솔로몬저축은행(02-2022-859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부실관련자 해당 여부를 사전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매수인이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
|---|

※ 부실관련자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매부동산의 우선수익자가

하며, 매도자(당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구매공고, 기타사항,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2) 구매공고(열람서류 포함)는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3) 본 구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매물건의 원 인채무 변제로 인하여 구매 당일 취소될 수 있으니 구매 참가 전에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대상 물건 세부 현황, 구매관련 기타자료 및 구매변경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www.koramco.co.kr) 및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www.onbid.co.kr)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문의 처로 문의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예보구매정보(<http://www.kdic.or.kr/k-assets/>)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관련 세부사항에 관한 문의■■■

홈페이지 : <http://www.koramco.co.kr> → 구매정보

문의처 : 신탁사업3본부1팀(02-2251-7318)

2022. 05. 18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